

[사 건 명] 행심 2019 - 86

『정보공개결정』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 가. 2017년 3월 \*\*\*\*검찰청에서 교육부로 청구인의 유치원에 대한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하였고, \*\*\*\*\*교육청에서는 관련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이첩 통보하여 2017. 4. 18. ~ 4. 21.까지 청구인의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8년 1월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함.
- 나. 2018. 3. 11. 정보공개신청자(김OO)가 피청구인에게 \*\*\*\*\*지원청 소속 유치원의 지난 3년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 감사결과를 정보공개 요청함.
- 다. 2018. 3. 20. 피청구인은 유치원명과 원장명을 제외한 유치원 감사 결과만 부분공개 결정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정보공개신청자(김OO)는 2018. 5. 31.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라. 2019. 4. 5.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결과 원고 승소하였고, 피청구인은 항소를 포기하고(2019. 4. 24. 위 판결 확정),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2019. 6. 17. 정보공개 하기로 결정하여,
- 마. 2019. 5. 1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함.
- 바.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3. 행정심판을 청구함.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상 원리인데, 청구인의 아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신상공개처분에 해당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나. 설령 청구인의 아들이 형사책임을 질만한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아들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에 반한다.
- 다. 정보공개 청구자가 요청한 공개대상 정보는 지난 3년간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이 대상이나, 청구인은 감사에서 적발된 바가 없으므로 정보공개 대상 유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유치원명, 원장명, 재판중이라는 정보,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합쳐질 경우, 이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7. 4. 18. ~ 4. 21.까지 청구인의 유치원에 대하여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수사 및 판결을 참고하여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정된 후 처분할 계획으로 별도의 감사처분은 하지 않았으며, 감사결과를 2018년 1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나.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수사 및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감사가 중단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또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 만으로는 재판이나 수사 관련 정보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하였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뿐 재량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다. 2018년 1월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특정감사 결과 내용을 요약하면 ‘지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행정상 처분은 보류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추후 감사 실시 예정’ 이라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유치원에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단정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공개된 감사결과에 ‘법원 판결에 따라 추후 감사 실시 예정’ 이

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 제13조 제3항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

마.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유치원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서 유치원 원장명도 알 수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련법규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취소판결의 기속력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신청자 김OO(원고)가 피청구인(피고3.)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 4. 5. \*\*\*\* 법원에서 ‘피청구인이 2018. 3. 20.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일심 판결이 선고되어 2019. 4. 20. 확정되었다.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제2항을 보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신청자(김OO)의 이전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의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은 위 판결에 의해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항목을 바꿔 살펴본다.

### 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의 포함 여부

위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공개청구한 이 사건 각 정보는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은 ‘정기 또는 특별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이어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가 중단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 또한 공개청구하였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피고들이 감사를 실시하던 중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되고 형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감사가 중단된 경우 ‘적발’의 취지에 방점을 두게 되면 이를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서 청구내용 란에 ‘비리감시’, ‘원비를 내며 아이를 보내는 부모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에 대하여 알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기재하였던 점, 피고 \*\*\*\*\*장은 당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찰에 의한 기소가 이루어진 유치원을 유치원 명칭은 삭제하고, 원장 성명은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객관적·합리적 의사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감시나 또는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종국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실시하던 중 위법사항이 적발된 유치원과 유치원장의 명단도 전부 공개하는 취지였던 것을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서 유치원 운영에 대한 감시나 또는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종국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실시하던 중 위법사항이 적발된 유치원과 유치원장의 명단도 전부 공개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유치원과 같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가 중단된 경우도 공개범위에 포함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감사결과 ‘지출 절차상 하자가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려 감사결과 적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지출 절차상 하자가 없음으로 행정상 처분은 보류하고, 법원판결에 따라 추후 감사 실시 예정’이라는 것은, 감사를 중단하고 행정처분을 보류한다는 것이지 종국적인 감사 결과를 내린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수사 및 판결을 참고하여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분할 계획으로 별도의 감사처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청구인 대리인이 본건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외관상 지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페이백 여부 등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어 더 이상 조사하지 못하고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감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유치원 운영에 대한 감시,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이라는 공개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사를 실시하던 중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와 본건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교육부로 범죄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교육청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청구인의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다 조사권의 한계로 중단한 것’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 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상의 대원칙이고,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형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공개하는 내용은, ‘지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행정상 처분은 보류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추후 감사 실시 예정’이라는 것으로, 청구인

의 유치원이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만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라. 헌법 제13조 제3항에 반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청구인의 아들의 행위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의 아들이 유치원 운영과정에서 윤○○과 공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아들의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청구인의 유치원과 관계된 것이며, 청구인은 책임자인 원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 마.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원 이름(명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유치원 이름(명단)이 동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제7호 단서 나목에 정한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유치원장의 성명(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나 사립유치원의 운영 특히 그 회계업무는 강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점, 유치원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유치원장 성명(명단)이 사생활에 해당한다거나, 그 공개로 인해 유치원장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제6호 단서 다목이 정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유치원장 이름(명단)이 동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제7호 단서 나목에 정한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 바. 결론

\*\*\*\*법원 판결에서 공개하도록 한 정보에는 청구인의 유치원 및 원장 명도 포함되고, 그 밖에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13조 제3항에 반하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함이 타당하다.

## V. 결 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